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6 호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(근무시간)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업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, 연장근로 주 12시간)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 형편상 필요에 의해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사업 운영 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 근무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. 또한,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,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. 단,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하되 근무상황에 대하여

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유급휴일 및 유급휴가)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해 직원과 협의하여 정상근무일에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.

제36조(병가 및 휴직) 제1항 중 “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2차 상급병원 입원에 한하여 연 1월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입원 및 수술 후 완치시까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” 로 하고,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2. 전염병의 질환으로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제36조(병가 및 휴직) 중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별표2의 가족수당란 중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고
조 정 수 당	기본급 × 33.34%	매 월	<삭제>
가 족 수 당	<u>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</u>	매 월	
이	하	생	략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
	직 위 성 명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
	경 영 지 원 부 장 관 성 우
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6조(병가 및 휴직)</p> <p>① <u>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2차 상급병원 입원에 한하여 연 1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육아휴직의 경우 인사규정 제40조(휴직)를 준용한다.</p>	<p>제36조(병가 및 휴직)</p> <p>① <u>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입원 및 수술 후 완치시까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</u></p> <p>2. <u>전염병의 질환으로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육아휴직의 경우 인사규정 제40조(휴직)를 준용한다.</p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2]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고
조 정 수 당	기본급 × 33.34%	매 월	<삭제>
가 족 수 당	배우자 :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·첫째 자녀 : 월 2만원 ·둘째 자녀 : 월 6만원 ·셋째 이후 자녀 : 1명당 월 10만원	매 월	

개 정 안

[별표 2]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고
조 정 수 당	기본급 × 33.34%	매 월	<삭제>
가 족 수 당	<u>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</u>	매 월	